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⁹² 2011년 2월 2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0년 9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2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1년 2월 22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

가. 제안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 구현, 녹색성장 도시의 실현, 기후변화 고도(高度) 적응 도시의 추진,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을 규정함(안 제 8조 및 제9조)
- 서울특별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4조)
-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구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 및 쾌적한 지역사회의 조성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등을 규정함(안 제15조~제17조)
- 녹색성장 도시의 실현을 위한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규정하고 녹색경영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녹색소비시장 확대 등을 규정함(안 제18조~제22조)

- 기후변화 고도(高度) 적응 도시의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및 기후친화적 도시관리기반 구축 방향 등을 규정함(안 제23조~제27조)
-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 등을 규정함(안 제28조~제31조)
- 서울특별시 녹색상 시상을 규정함(안 제32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청수)
 - 가. 조례안의 제안배경
 -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 구현, 녹색성장 도시의 실현, 기후변화 고도(高度) 적응 도시의 추진,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의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의 체계는 조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1장(총칙)~7장(녹색생활 및 지속 가능발전의 실현),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나. 용어정의 관련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지속가능발전"은 환경적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의 균형·조화 및 현세대와 다음세대간 형평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녹색성장"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녹색성장이라는 용어자체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이 지적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다. 녹색성장위원회1)의 구성과 권한

-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다한 측면이 있으며, 2인의 위원장 중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나머지 1인은 시장이 지명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임
- 또한,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으로 에너지 계획, 에너지 관련시책, 에너지의 안정적 이용 및 신·재생에 너지 개술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사항등을 기술하고 있음

¹⁾ 서울시에서는 2009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 녹색성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서 규정된 에너지위원회에서 소관하는 내용과 중복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칙에서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의 "에너지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조례 개정의 법제적 한계2)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음

라.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

○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때의 기본원칙과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기본 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된다는 점과 하위개념인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포괄적인 개념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통합한다는 것은 개념적 부조화의 측면이 있음

마. 서울시 녹색상

○ 녹색생활운동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개인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녹색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이미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환경상"등 9개분야의 시민상 제도를 통합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 녹색상을 명시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환경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바. 종합결론

-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정책과 에너지정책, 녹색성장을 통합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됨
- 특히, 본 조례안의 부칙에서 에너지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조례 개정의 법** 제적 한계3)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부칙 제2조는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는 별 도의 개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시 부칙으로「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에너지 기본법」의 제명과 함께 핵심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³⁾ 특정 조례의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관련 조례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규체계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관련 조례를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며, 조례개정의 시차에 따른 조례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입법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방식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 데,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에 수반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조례의 자구 또는 인용조문을 정리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관련법규]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 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시·도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
-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 ④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3. 지방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 제10조(에너지위원회) ①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너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다.
- (5) 위촉직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 2. 에너지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 4. 관계공무원
-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⑦ 당연직 위원은 5명 이내에서 에너지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⑧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에너지 관련 시책의 개발 및 평가
- 2. 에너지계획의 심의
- 3. 에너지의 안정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심의
- 4. 에너지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
- 5. 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6.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심의
- ⑨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서울특별시 시민상조례
- 제2조 (시상의 종류 및 인원) ① 서울특별시시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시상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개정 2006.11.20, 개정 2010.01.07)
- 1. 서울특별시봉사상
- 2. 서울특별시문화상
- 3. 서울특별시환경상
- 4. 서울특별시복지상
- 5.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
- 6. 서울특별시여성상 (신설 2004.06.21)
- 7. 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

- 8. 서울특별시건축상
- 9. 서울특별시토목상
- ② 제1항의 시상종류별 시상인원은 별표1과 같으며 세부시상분야는 각 시상종류별 시상인원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7.19, 2010.01.07)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7. 수정안 요지

가. 수정 이유

○ 조례안의 부칙에서 에너지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조례 개정의 법제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으며, 녹색상은 기존의 환경상과 중복될 수 있어 이를 삭제하고 그 밖 에 조례상의 불필요한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함

나. 수정 주요골자

- 녹색성장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공동위원장중 위원장 1인에 대하여 호선한 결과를 존중하 도록 함
- 서울시 녹색상은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에 따른 환경상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삭제함
- 조례안의 부칙에서 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삭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근거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관련 조문을 정비함
-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0. 7. 23~8. 11) 결과 : 따로붙임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아님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92 번 호

제안연월일 : 2011년 2월 22일 제 안 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 이유

○ 조례안의 부칙에서 에너지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조례 개정의 법제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으며, 녹색상은 기존의 환경상과 중복될 수 있어 이를 삭제하고 그 밖 에 조례상의 불필요한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 녹색성장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공동위원장중 위원장 1인에 대하여 호선한 결과를 존중 하도록 함
- 서울시 녹색상은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에 따른 환경상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삭제함
- 조례안의 부칙에서 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삭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근거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관련 조문을 정비함
- 3. 참고사항 : 생 략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의 제목 "(서울시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시 녹색성장위원회"를 "서울특별시녹색성장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를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5호중 "에너지 계획의 심의"를 "에너지 계획"으로 제6호중 "사항 심의"를 "사항"으로한다.

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위원회에"를 "호의"로 한다.

안 제19조의 제목"(서울형 녹색기술 육성)"을 "(녹색기술 육성)"으로 하고, "서울형 녹색기술을"을 "녹색기술을"로 한다.

안 제2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안 제32조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 1 0 조 (서울시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 1 0 조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위원장은 행정 1 부시장과 제 4 항 제 3 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 <u>하는 사람이 된다.</u>	③						
④ 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1. ~ 3. (생 략)	1. ~ 3. (조례안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조례안과 같음)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8						
1. ~ 4. (생 략)	1. ~ 4. (조례안과 같음)						
5. 에너지 계획 <u>의 심의</u>	5. 에너지 계획						
6. 에너지의 안정적 이용 및 신·재 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 보급에 관한 사항 <u>심의</u>	6 사 항						
7. (생 략)	7. (원안과 같음)						
⑨ (생 략)	⑨ (원안과 같음)						
제 1 2 조 (분과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 · 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 2 조 (분과 위 원회 구성) ① 						

- 제 1 9 조 (서울형 녹색기술 육성) 시 장은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세계시 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적합한 <u>서울형 녹색기</u> 의 기준에 적합한 <u>서울형 물</u>을 선정 지원할 수 있다.
- 제 2 8 조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 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 국토는 .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터전이며 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 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 토의 개발 및 보전 · 관리가 조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 、교통체계를 저탄소 녹색성 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 ·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_시, 기업 및 시민은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시민의 일상 생활 속에 녹색색확이 """ 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 _시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 정비함으 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 제 32조(서울특별시 녹색상의 시상)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상패 · 메달 및 시상금 등 서울특별시 녹색상을 무성하여 수 있으며, 시상 인원 등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단차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상패 에 달 및 시상금 등 서울특별시 녹색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시상 인원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수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시민상운영조례」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	1	9	조	(녹	색	ブ		술	육	성)	
---	---	---	---	---	---	---	---	--	---	---	---	---	--

<u>녹 색 기 술 을</u>

제	28 의							전
		 	 	 	· – – ·	 	 	

<u>〈삭 제〉</u>

〈삭 제〉

- _ ´n , 기업 및 시민은 지 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성실히 이행하고 , 시민의 생활 속에 녹색새하기 시 민 의 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 2. 시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 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모모 를 ㅜ ㅆㅗ ㅡ ㅗ ´ ´ ´ ´ ㅇ ´ ´ 생산시스템을 개발 · 정비함으 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u>〈삭제〉</u>

부칙

제1조(시행일) (원안과 같음)

<u>〈삭 제〉</u>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 3.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란 에너지 사용, 소비 및 순환의 전 과정에서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 화하고 지역 내 탄소의 직접배출 억제와 기 배출된 탄소의 흡수원 확대를 통해 대기질의 청정화 를 구현하며, 저탄소 에너지 사회를 위한 시민 실천문화 기반이 튼튼하게 자리잡은 도시를 말한 다.
- 4. "녹색성장 도시"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시장 조성과 일자리 만들기 등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체계와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 5."기후변화 고도(高度)적응 도시"란 폭염, 열대야, 폭우 등 이상 기온과 기상재해를 예측하고 기 상재해 및 병원성 매개체 증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갖춘 도 시를 말한다.
- 6.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 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 7.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 8."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 9.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 10."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 11.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_2), 메탄(CH_4), 아산화질소(N_2O), 수소불화탄소(HFC_8), 과불화 탄소(PFC_8), 육불화황(SF_6)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 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 12.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 13.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14."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 시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 2. 시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 3. 시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 4. 시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 5. 시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 6. 시는 사회 · 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 7. 시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 8.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동향(動向)을 반영한 국가정책에 협력함으로써 국 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
-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지역사회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시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시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시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녹색경영 등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⑤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모니터 링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시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 최소화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 ② 시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에 기여한다.
 - ③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저 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 제8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절차)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국가전략 및 국가 5개년 계획이 수립·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5년 단위로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로의 전환, 녹색성장도시의 실현, 기후변화 고도 (高度) 적응 도시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시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 4. 시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 5. 관할 자치구와 연계한 녹색성장 추진체계
 - 6.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3장 녹색성장 추진 체계

-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제4항 제3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시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 3.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⑦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2조 제1항 각 호 순서에 의한 분과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시 추진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 3. 시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 4. 에너지 관련 시책의 개발 및 평가
 - 5. 에너지 계획
 - 6. 에너지의 안정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⑨ 제4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와 제3호 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녹색산업 분과위원회 : 추진계획, 재정, 법제도 및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 2. 기후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 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 3. 녹색생활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관리 등의 분야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 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국제협상, 기업고충처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 ③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의 형 태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 구현

-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시장은 시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확산을 위한 선 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 ③ 시장은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 ④ 시장은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탄소발생 저감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도로 조명 및 실내조명의 광원을 발 광다이오드(LED) 등 친환경 광원으로 교체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 보급 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1.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 2. 에너지 · 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 3.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 4.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 추진
 - 5.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오염도 저감 정책 추진
 - 6.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교통수요 관리

- 7. 친화경 자동차 보급 촉진
- 8. 자동차 저공해 사업 지원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관리
- 9.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 10.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ㆍ시행
- 제17조(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시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5장 녹색성장 도시의 실현

- 제18조(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특례 등) ① 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원 조성 및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 득세·재산세·등록세·지방소비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자치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또는 보상을 할수 있다.
 - ⑤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

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 제19조(녹색기술 육성) 시장은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녹색기술을 선정 지원할 수 있다.
 - 1. 친환경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술
 - 2. 시의 도시특성과 조화되어 개발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
 - 3. 시의 연구개발, 정보기술 등 우수한 기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 4. 노약자, 어린이, 여성 등 취약집단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기술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 제20조(녹색산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 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경영, 국내·외 마케팅 지원
 - 2. 산업뉴타운과 연계한 녹색산업 집적화 거점 조성
 - 3. 녹색기술 관련 산·학·연·관 협력이 활성화되는 연구 도시 구현
 - 4. 녹색기술 관련 연구개발 거점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찰, 위해요소 제거, 지원체계 개발·운영 등 체계적 지원
- 제21조(녹색경영 및 일자리 창출 확대) ① 시장은 기업의 녹색경영을 확대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모든 시민이 녹색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녹색경영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습득 기회를 시민에게 확대·제공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녹색소비 시장 확대) ① 시장은 녹색시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공공·기업·가정부문의 저탄 소 경제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녹색소비 촉진을 위한 분위기 및 여건 조성으로 녹색소비 생활의 빠른 정착을 도모하여 야 한다.

- ③ 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자발적 노력을 정책적으로 견인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판매환경·판매 제품·판매방법의 녹색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탄소 중립 사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동센서 조명 설치, 친환 경 사무기기 구매, 탄소성적 표시 제품 구매 등 녹색사무실 장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장 기후변화 고도(高度) 적응 도시의 추진

제23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제24조(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 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선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취약분야에 대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기후 변화에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기후변화대응 협력망 구축) 시장은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외 협력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26조(시민들의 기후 적응능력 향상) 시장은 시민들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적응 종합 정보 제공, 시민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 교재 개발·보급, 대상별 특화된 교육·후련 사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 **제27조(기후친화적 도시관리기반 구축)** ① 시장은 기후영향을 고려한 도시설계 및 개발기준 정립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도시 열섬 완화 등을 위하여 도심녹지를 확충하고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 **제28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 시, 기업 및 시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시민의 일상생활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 2. 시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 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 제29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시장은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0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시장은 시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실적 및 감축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 표창, 인센티브 등의 제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횟수 및 시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홈페이지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31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 써 기업과 시민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녹색성장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